

# 노 원 구

우129-201 서울 노원 상계1동 산95-1 / 전화 ( 02 ) 950-3405 / 전송

문서번호 토목 30500 - 91  
 시행일자 1992.1. 18  
 (경유)  
 수신 각안참조  
 참조 314

최급		부구청장	구청장	시장
보존		[인]	전결	[인]
건설국장	[인]			
토목과장	[인]			
토목계장	[인]			
기안	정영수 [인]			협조

제목 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 변경인가

(제1안)

수신: 내부결재

제목: 같은건

1. 노원구 고시 제1992-60호(92.11.7)인가 고시한 상계역-중계2지구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주택30411-87(93.1.12)호에 의거 올림픽지역주택조합 입지심의 조건중 노폭 20M 도시계획도로(중계동 453-20)중 노폭 4M만 기부채납토록 변경되었기 노폭 16M를 포함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.

- 첨부: 1) 변경인가증 1부.  
 2) 변경고시안 1부.  
 3) 물건 및 토지조서, 위치도 1부. 끝.

(제2안)

수신: 건설부장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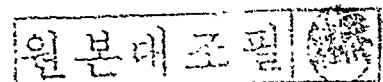
발신: 서울특별시장

참조: 도시정비과장

제목: 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 변경인가 보고

1.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상계역-중계2지구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도시계획법 제25조, 제26조 및 건설부 지침(도설 30310-8871(88.5.13)호)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고시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첨부고시(안) 사본과 같이 보고합니다.

첨부: 1) 변경 고시(안) 사본 1부.



2)도면 1부. 끝.

(재3안)

수신:서울특별시

참조:수신처 참조

제목: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 변경인가 보고

1. 토목30500-3206(92.11.7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위호로 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상계역~중계2지구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.

첨부:변경 고시(안) 1부. 끝.

수신처:시설계획과장, 도시계획과장, 도로계획과장, 도로시설과장

(재4안)

수신:서울특별시

참조:공보관

제목:시보 게재 의뢰

1. 토목30500-3206(92.11.7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우리구 관내 상계역~중계2지구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시보에 게재 의뢰하오니 등 변경고시(안)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시보 게재 구분:고시

나. 시보 게재 건명: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 변경인가

다. 법적근거:도시계획법 제26조

첨부:1)변경 고시(안) 사본 2부.

2)물건 및 토지조서 1부 끝.

(재5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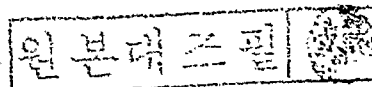
수신:서울특별시

발신:노원구청장

참조:시민과장

제목:시장 직인날인 신청

1.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상계역~중계2지구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(도로)



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관인날인 신청합니다.

가. 신청 문서명:건설부 보고문,구 및 등개시판 게시용 고시사본 3부.

첨부:1)건설부 보고문 사본 1부.

2)구 및 등개시 지시공문 사본 3부.

(제6안)

수신:수신처 참조

제목: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 변경인가 홍보

1.토목30500-3206(92.11.7)호와 관련입니다.

2.우리구 관내 상계역~중계2지구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하였기에 홍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고

3.보상 주관과장(건설관리과,주택과)은 저촉지장물(토지,건물)을 조속히 보상 및 철거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

4.관할 동장은 등 변경고시(안)을 등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주민에게 홍보할것.

첨부:1)변경 고시(안) 사본 1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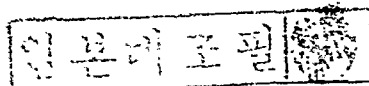
2)물건 및 토지조서 1부. 끝.



수신처:도시경비과장,건설관리과장,주택과장,중계4동장



노 원 구 청 장



# 변 경 고 시 (안)

서울특별시 고시 제 1993-14 호

##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 변경인가

1. 노원구 고시 제1992-60('92.11.7)호로 인가고시 완료된 상계역~중계2지구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토목과,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3 . 1 . 18

서울특별시 장

가. 사업내용 -

구분	사업시행지	사업종류 및 사업명칭	사업 규모	사업 기간	비 고
당초	중계4동	도시계획사업(도로) 상계역~중계2지구간 도로개설공사	B=20M L=274M	인가일로부터 '93.12.31	
변경	변경없음	변경 없음	변경없음	변경없음	

나. 사업시행자: - 당초:노원구청장

- 변경:서울특별시장(노원구청장)

다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물의 소재지, 지번 및 통제관 이외의 권리명세: 별항

라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,

성명: 별항

마. 변경사유: 사업시행자 변경, 보상추가면적 및 시보개폐 누락토지분 반영

# 변 경 인 가 증

## 1. 사업 내용

구분	사업시행지	사업종류 및 사업명칭	사업 규모	사업 기간	비 고
당초	중계4동	. 도시계획사업(도로) . 상계역~중계2지구간 도로개설공사	B=20M  L=274M	인가일로부터  '93.12.31	
변경	변경없음	변경없음	변경없음	변경없음	

가. 사업시행자: -. 당초: 노원구청장

-. 변경: 서울특별시(노원구청장)

나. 사업기간: 인가일로부터 '93.12.31까지

다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물의 소재지, 지번 및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: 별항

라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 
성명: 별항

마. 변경사유: 사업시행자 변경, 보상추가면적 및 시보계제 누락토지분 반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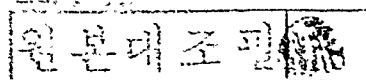


도시계획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 
(도로) 실시계획을 인가함.

1993 . 1 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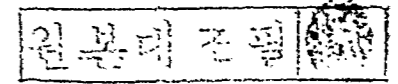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

21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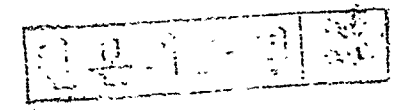


사업시행처명 :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
 사업시행자주소 : 노원구 상계동 701-1  
 사업의종류 : 상계역-중계2지구간 도로  
 • 개설회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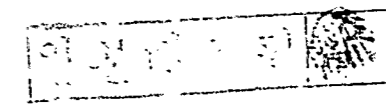
기 정										변 경										
소재지 지번	지목	지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실 제 용 상 황	소유자		관 계 인			소재지 지번	지목	지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실 제 용 상 황	소유자		관 계 인			
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소유권이외의 권리및내용종류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소유권이외의 권리및내용	
중계동 188-46	구거	205	205			노원구청						변			경		없			음
중계동 157-56	대지	31	31		오치남	화곡동 362-49						변			경		없			음
중계동 157-55	잡종	2	2		명지 상사	중계동 158-6						변			경		없			음
중계동 157-4	대지	132	132		최일림	중계동 158-34						변			경		없			음
중계동 157-29	전	2002	1947		서울시							변			경		없			음
중계동 157-58	도	169	169		국유지	(건설부)						변			경		없			음
중계동 157-39	대지	86	86		이영달	중계동 158-31						변			경		없			음
	시	보	계	재	누	락	토	지	본	중계동 157-17	대지	86	86		조규설	상계동 188-6 1/1				
중계동 157-10	대지	50	50		송연옥	중계동 157-7						변			경		없			음



기										변									
소재지 지번	지목	지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실재 이용 상황	소유자		관 계 인			소재지 지번	지목	지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실재 이용 상황	소유자		관 계 인		
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소유권이외의 권리및내용종류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소유권이외의 권리및내용
중계동 157-36	대	26	26		한중식	용산구신 창동5-417									경		없		미
					양명우	중계동 157-7	서울시(노원구청)		압류				변						
중계동 157-34	대	169	169				서울시(도봉구)						변		경		없		미
중계동 157-32	대	588	588		양명우	중계동 157-4	서울시(도봉구)		압류				변		경		없		미
					한중식	강남구서 초동1062-1													
중계동 450-11	전	151	151				노원구청						변		경		없		미
중계동 434-50	전	15	15				노원구청						변		경		없		미
중계동 450-3	도	200	200				서울시						변		경		없		미
중계동 193-9	도	128	128				서울시						변		경		없		미
중계동 450-6	전	60	60				노원구청						변		경		없		미
중계동 193-2	대	205	205		김종권	경기도미 곡 시도농동 298-1제일 아파트101-205							변		경		없		미



기										변									
소재지 지번	지목	지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실 제 용 상 황	소유자		관 계 인			소재지 지번	지목	지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실 제 용 상 황	소유자		관 계 인		
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소유권이외의 권리및 내용 종류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소유권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
중계동 188-58	대	5	5		김중택	중계동 188-45						변	경		없	음			
중계동 453-20	임	1,533	613		박정식 외4인	월계동 509-6				중계동 453-20	임	1,533	1,255		박정식 외4인	월계동 509-6			
중계동 157-59	천	100	100		국(건설부)							변	경		없	음			
중계동 193-8	전	2	2		대한예수교도봉구 장로회 중계동 생명교회	193-8						변	경		없	음			
				이											백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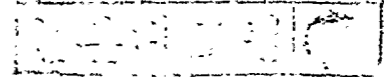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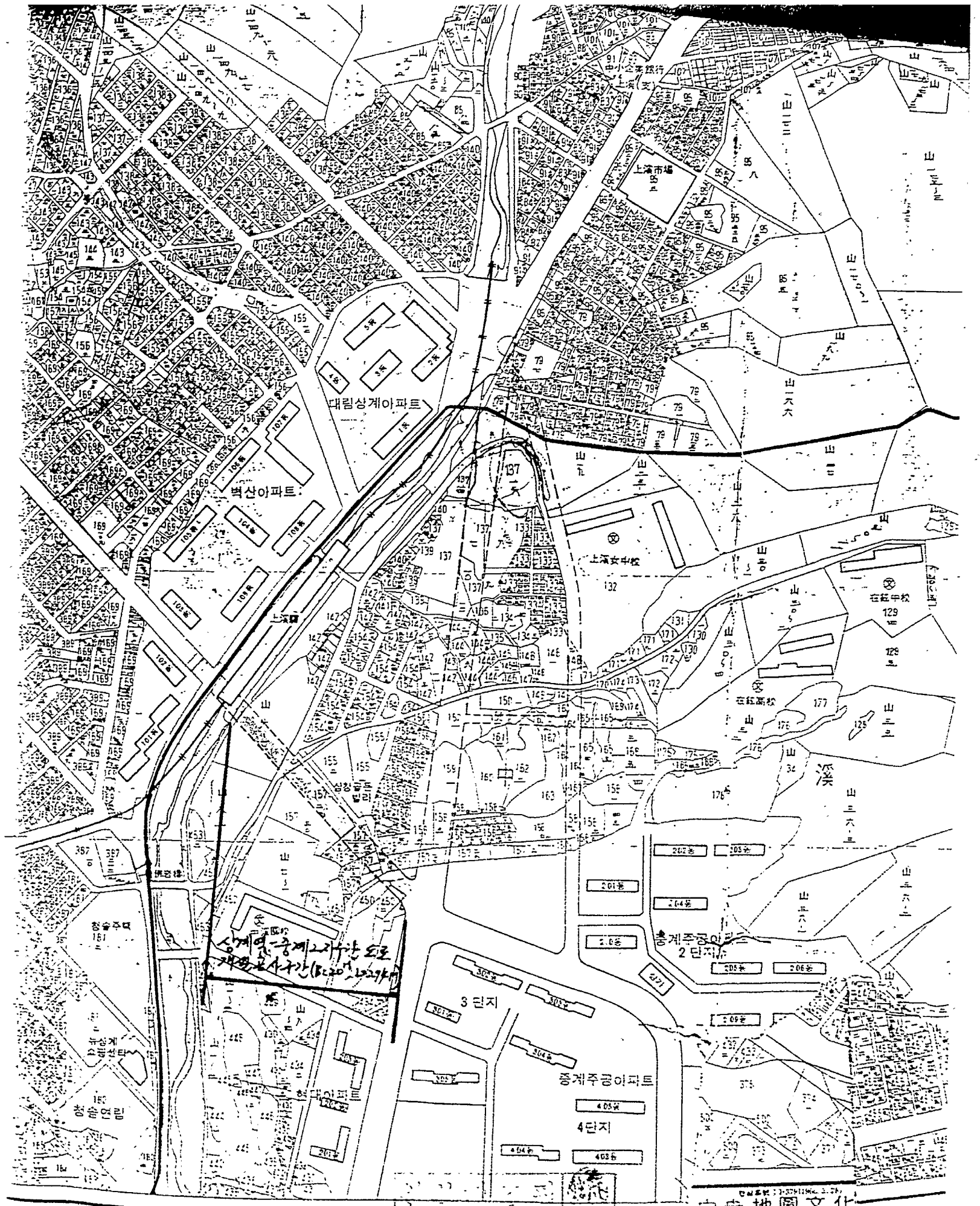


물 건 조 서

부산광역시영도구 · 서동구영서노원구경상  
 사업시행자주소:노원구상계동 701-1  
 사업의 종류 :상계역-중계2차구간도로  
 개설공사

기 정										변 경									
소재지 지번	물건 의 종류	구조 및 규격	실재 이용 상황 수량 (㎡)	소유자		관계인			소유권이외의 권리및내용종류	소재지 지번	물건 의 종류	구조 및 규격 (㎡)	실재 이용 상황	소유자		관계인			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및내용
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성명						주소	성명	주소			
				* 물건조서는 변경사항없음															
					이			하						백					





# 노 원 구

우 139-206 서울 노원구 상계6동 701-1 / 전화(02)950-338-3 / 전송 950-3481~3

문서번호 주택 30411-89  
 시행일자 1993. 1. 14. ( )년

(경유)

수신 수신처 참조

참조

선			지		
결	토목과장		지		
접	일 자		결		
	시 간	93. 1. 14			
수	번 호	124	재	외안서	김
	처 리 과	토목과		주장	
담	당 자	김병관	공		
			람		

제 목 :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심의 결과 통보

1. 1. 우리구 관내 경계 동 45번지 16호 지상 민영주택 사업계획 입지심의 결과를 첨부와 같이 통보하(오)니 업무에 참고 하(시)기 바란(니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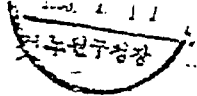
첨부 :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심의 결과 1부. 끝.

노 원 구 장

수신처 : 토목과장, 도시정비과장, 건축과장, 공업복지과장, 환경과장, 산업과장,  
 지적과장, 건설관리과장, 학수과장, 영소과장, 재무과장, 토지관리과장,  
 북부수도사업소장 <공무과장>.

## 입지심의 결정 사항

- 대 지 위 치 : 노원구 중계동 453번지 16호
- 사 업 주 체 : 올림픽지역주택조합
- 사 업 규 모 : 아파트 15층 1동 124세대
- 심 의 결 과 : 기 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심의 조건중 1 ~ 4번 조건은 아래 조건으로 변경 가능함.

1. 사업부지 서측 관습도로는 첨부 도면과같이 변경되어야 4M노도 개설후 제적  
부지 포함 우리구에 기부채납 할 것.
2. 6M계획도로 저축부분(중계동 453-21)은 포장 개설후 준공전까지 우리구에 기부  
채납할 것.
3. 신청지 남동측 부분의 도로폭 20M와 6M 점속부분을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 
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6M이상 기각전제후 우리구에 기부채납  
할 것.
4. 사업부지 북측 제척부지(179.51㎡)는 사업주체에서 기존무허가 건물 철거후  
나대지 상태로 공공용지로 우리구에 기부채납하고, 폭 20M도시계획도로중 4M를  
93. 6.30일까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 우리구에 기부채납 할 것. 
5. 사업부지 및 공공용지 기부채납 부지상의 기존건물(무허가 건물등포함)의 소유  
자및 세입자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업승인 신청전에 조합자체에서 최대한 해결  
후 기존 건물을 멸실 할 것.